◉완도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1호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,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완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06일

완도해양경찰서장

(완도해양경찰서)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

1.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

순번	항 만 명	소 재 지	고 시 구 역
1	완도항	완도군	신지도 상산 정상(34-19.91N, 126-47.40E)과 동망봉 정상(34-18.61N, 126-46.02E)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(34-20.08N, 126-45.11E)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(툭 불거져 나온 끝 부분)(34-19.75N, 126-44.72E)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
2	마량항	강진군	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(34-26.70N, 126-49.38E)과 (34-26.70N, 126-48.89E)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,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

2.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: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061-550-2549) 및 민원실
3. 참고사항: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,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18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재검토 기한: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고시 폐지)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-1호는 폐지한다.